

## < 부패행위 신고안내 >

### 1. 부패행위 신고대상

-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  - \* 공직자 :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직원
-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  - \* 공공기관 : 각급 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, 교육자치단체,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선거관리위원회, 감사원, 공직유관단체 등
-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### 2. 부패행위 신고방법

-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는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 신고는 방문, 우편, 팩스, 출장, 위원회 홈페이지,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면 됩니다.

### 3. 부패행위신고자 보호 제도

- 신분보장
  - 신고를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지 않음
  - 부패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과태료나 징계처분 등을 받게 됩니다.
  - 신분보장조치
- 신변보호
  - 부패신고를 한 이유로 신고자 자신과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### 4.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

- 부패행위를 신고함으로써 인하여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훈법 등의 규정에 따라 포상을 추천할 수 있음

## 〈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〉

### 가. 금품·향응 수수관련 신고

부패행위 등의 유형	포상금 지급기준	상한액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 하고 위법·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20% 이내	5,000만원
직무와 관련하여 금품·향응을 수수하였으나, 위법·부당한 처분은 하지 아니한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5% 이내	3,000만원
의례적인 금품·향응 수수의 경우	금품·향응 수수액의 10% 이내	1,500만원

### 나. 기타 부패행위 등의 신고

신고내용에 대한 조사결과	지급액
징계처분이 있는 경우	100만원
주의, 경고 등 감사처분이 있는 경우	30만원